## KOSHA GUIDE

C - 15 - 2017

- (7) 절단된 포장재 등 폐자재를 반출·운반할 때에는 주변도로 상황 및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8)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단된 포장재를 반출·운반할 때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5.2 자재 운반작업

- (1) 작업 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,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- (2)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후진경보기, 후사경,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아웃트리거 인출, 와이어로프의 상태, 훅 해지장치 부착여부 등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자재 등의 떨어짐 위험구역 내에는 공사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 하역 및 적치장소를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가 출입 하지 않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6) 자재 하역 및 적치 장소는 굴착면에서 충분히 이격된 평탄하고 다짐이 충분한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, 자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목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그 밖의 사항은 KOSHA GUIDE C-48-2012(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지침)에 따른다.